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2144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21443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가단12418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인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이종진

변론 종결 2024. 10. 24.

판결 선고 2024. 11. 21.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가단124185 판결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21. 2. 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21. 2. 4. 접수 제4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당심에서 C의 적극재산 중 양주시 K동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를 반영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C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적극재산이 140,863,280원이 되기는 하나, 여전히 소극재산 합계 153,396,701원보다 적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이나 이 사건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감정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의 가항 2)의 제4쪽②, ③번(제4쪽 2번째 줄에서 7번째 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당심에서의 감정평가사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양주시 F전 595m² 및 G 대 2,132m² 중 각 지분 18분의 1 감정가는 합계 75,863,280원이므로, 위 감정가대로 가액을 인정한다.

③ 적극재산 합계 140,863,280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함종식

판사김혜령

판사홍유정

별지